

□ 기본급

(단위: 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호봉		3,169,000	2,703,000	2,550,000	2,518,000	2,492,000	2,466,000
2호봉		3,239,000	2,784,000	2,577,000	2,545,000	2,519,000	2,493,000
3호봉		3,312,000	2,872,000	2,604,000	2,572,000	2,546,000	2,520,000
4호봉		3,390,000	2,969,000	2,631,000	2,597,000	2,571,000	2,545,000
5호봉		3,470,000	3,068,000	2,712,000	2,618,000	2,593,000	2,567,000
6호봉		3,563,000	3,167,000	2,812,000	2,638,000	2,616,000	2,591,000
7호봉		3,663,000	3,266,000	2,912,000	2,659,000	2,643,000	2,618,000
8호봉		3,763,000	3,365,000	3,004,000	2,743,000	2,664,000	2,640,000
9호봉		3,863,000	3,475,000	3,102,000	2,842,000	2,761,000	2,661,000
10호봉		3,963,000	3,575,000	3,202,000	2,929,000	2,844,000	2,705,000
11호봉		4,063,000	3,675,000	3,298,000	3,008,000	2,941,000	2,780,000
12호봉		4,163,000	3,730,000	3,359,000	3,069,000	2,996,000	2,847,000
13호봉		4,263,000	3,785,000	3,426,000	3,148,000	3,053,000	2,893,000
14호봉		4,363,000	3,850,000	3,494,000	3,228,000	3,104,000	2,959,000
15호봉		4,444,000	3,915,000	3,566,000	3,281,000	3,162,000	3,010,000
16호봉	4,912,000	4,524,000	4,006,000	3,637,000	3,354,000	3,218,000	3,081,000
17호봉	4,969,000	4,602,000	4,073,000	3,708,000	3,401,000	3,265,000	3,157,000
18호봉	5,022,000	4,672,000	4,147,000	3,776,000	3,472,000	3,330,000	3,218,000
19호봉	5,096,000	4,738,000	4,212,000	3,841,000	3,530,000	3,388,000	3,272,000
20호봉	5,173,000	4,802,000	4,278,000	3,902,000	3,590,000	3,448,000	3,336,000
21호봉	5,271,000	4,862,000	4,339,000	3,966,000	3,644,000	3,527,000	3,410,000
22호봉	5,336,000	4,923,000	4,399,000	4,020,000	3,699,000	3,585,000	3,471,000
23호봉	5,395,000	4,985,000	4,454,000	4,073,000	3,748,000	3,639,000	3,530,000
24호봉	5,451,000	5,046,000	4,513,000	4,122,000	3,796,000	3,701,000	3,574,000
25호봉	5,506,000	5,107,000	4,568,000	4,176,000	3,843,000	3,740,000	3,629,000
26호봉	5,577,000	5,170,000	4,620,000	4,223,000	3,889,000	3,789,000	3,679,000
27호봉	5,622,000	5,233,000	4,681,000	4,270,000	3,935,000	3,839,000	3,729,000
28호봉	5,661,000	5,296,000	4,744,000	4,317,000	3,979,000	3,898,000	3,789,000
29호봉	5,729,000	5,360,000	4,807,000	4,364,000	4,023,000	3,960,000	3,849,000
30호봉	5,788,000	5,424,000	4,867,000	4,411,000	4,063,000	4,018,000	3,909,000
31호봉		5,484,000	4,917,000	4,461,000	4,113,000	4,078,000	3,969,000

□ 제수당 지급기준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명절휴가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 배우자 4만원 - 자녀 · 첫째 5만원 · 둘째 8만원 · 셋째 이후 12만원 - 기타 2만원	
시간외수당 ※시설장 제외	소정근로시간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① (8시간 미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② (8시간 이상) 휴일근로시간×통상 임금×1/209×2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 최대 월 15시간이내 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이내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재직중인 종사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 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4만원)	매월	<u>14만원</u>	
관리자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2만원)	매월	<u>22만원</u>	
조정수당	국시비지원시설 정규직원	서울시 직급 기본급 - 복지부 기본급 차액	매월		

□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 생활시설의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영양보호사, 보육사 등) 중 **직접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 기준으로 적용**하고 거주시설의 조리사, 조리원은 시간외수당 월 40시간까지 지급 가능함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서울시 시설 소관 부서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따름

○ 가산금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한 범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 법인 전입금,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지급 가능

※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는 달에 최대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부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휴일 근로수당 지급 가능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제수당지원 기준

- ◆ 적용시설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 전년도 대비 개정 기준은 '26.1.1부터이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1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 정규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 가능
- 부양대상자 인정 범위
 - ① 배우자 (사실혼 제외)
 - ② 직계비속 중 자녀 ((외)손자녀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자
 - ③ 직계존속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여자(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④ 형제자매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만)19세 이상도 포함)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 ① 배우자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 ② 직계존속 : 계부 및 계모도 요건 충족 시 지급 가능
- ③ 직계비속 : (만)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만)19세 이상의 장애 자녀
 - 입양자녀
 - 재혼으로 배우자의 친생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 이혼의 경우, 자녀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지급
- ④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요건에 맞을 경우, 대상자 포함

○ 지급요건 (①, 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태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급액 ('25년 자녀수당 인상)

- 배우자 : 월 4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 둘째 월 8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 가족관계증명서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 확인 후 지급, 미성년자녀 인원 제한 없음

-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 5만원+둘째 8만원+셋째 12만원 = 25만원
-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 5만원+둘째 8만원+셋째·넷째 24만원 = 37만원

- 그 외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를 제외하고 배우자, 그 외 부양가족은 4명까지 지급 가능

○ 지급 및 소멸시기

- (전액지급) 지급사유의 발생 및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전액 지급

·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

· 사망 : 사망일 (사망신고일이 아님)

· 결(재)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이혼 : 재판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지급사유 소멸일(자녀의 연령 초과일이 발생하는 달은 지급)

- (일할지급) 인사상 임용(발령)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지급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②사립학교, ③별정우체국, ④공공기관, ⑤지방공사

⑥지방공단, ⑦국립학교

- ⑧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2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급액 : 지급 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0일인 경우 >

-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0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1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3 관리자 수당

- 지급대상 :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시설장 중 승진 또는 신규 채용되어 상근직 시설장
- 지급시기 : 매월 ※변동일 기준 일할 지급
- 지급액 : 정액급여 월 22만원

4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인건비를 지원받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으로서 지급월 기준 재직 중인 자
- 지급시기 : 매월 ※변동일 기준 일할 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정액급여 월 14만원